

| | |
|--------------|--------------------|
| 의안번호 | 제 625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7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 | |
|-------|---------------|
| 발 의 자 | 최 광 옥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29일 |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최광옥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25 |
|----------|-----|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29일

발 의 자: 최광옥, 정영수, 이종욱,
이숙애, 임헌경, 윤홍창,
윤은희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인문소양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학교 인문소양교육 운영(안 제5조)
- 라. 인문소양교육 주간 운영(안 제6조)
- 마. 인문소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안 제7조)
- 바. 인문소양교육 지원(안 제8조)
- 사. 인문소양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안 제9조)
- 아.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 문화예술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북도의회 공고 제 2017-26호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이 인문적 소양과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소양교육”이란 역사, 문화, 예술, 철학 등의 학문을 인간의 삶과 연관시킨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소양교육 진흥의 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2.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보급
3. 인문 동아리 활동 지원

4.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5. 인문소양교육 진흥활동 홍보
6. 인문소양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7. 인문소양교육 추진실적 점검
8.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문소양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 인문소양교육)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문소양교육이 독서·토론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활동,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소양교육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문소양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인문소양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관련 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문소양교육 연구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 및 연구학교(이하 이 조에서 “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학교는 특성화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인문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인문 선도학교 운영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소양교육 활동을 개발, 공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문선도학교의 지속적 운영 지원 필요
- 학생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 창의적예술 체험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생 인문 활동 지원 필요

3. 관련조문

- 제8조(인문소양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교의 인문소양교육 관련 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문소양교육 연구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인문소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 및 연구학교(이하 이 조에서 “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인문동아리 10개, 선도학교 2개 운영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 연간 운영비 추계 | | 연도별 운영비 추계 | | | | | |
|----------------------------|--------|------------|--------|--------|--------|--------|---------|
| 산출기초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1. 운영비 |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가. 학생동아리운영 1,000,000원×10개=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나. 인문선도학교운영 5,000,000원×2교=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다. 재원조달방안: 특별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교육국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17년) | 2차년도 (2018년) | 3차년도 (2019년) | 4차년도 (2020년) | 5차년도 (2021년) | 계 | |
|-------------------------|-----------------|-----------------|-----------------|-----------------|-----------------|---------|---------|
| 세 입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특별교부금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세 출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인문학생동아리운영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인문선도학교운영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재원 조달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의존 재원 | 소 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국고보조금 | | | | | | |
| | 보통교부금 | | | | | | |
| | 특별교부금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0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자체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